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08
----------	-----

2020. 9. 1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최경천 의원
- 나. 발의일자: 2020년 8월 26일
- 다. 회부일자: 2020년 8월 28일
- 라. 상정일자: 2020년 9월 9일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경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휴가 관련 규정 개정(안 제16조)

- 장기재직휴가 휴가 일수 확대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신설>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20일	

- 종전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고 대상기관 등을 확대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명 칭	학습휴가	자기계발휴가	
대상기관	각급학교	전체기관	
휴가일수	연간 3일	연간 5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 제9조(출장공무원)
-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 제5항
-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제18조(병가)
- 제19조(특별휴가) 제2항, 제6항

- [별표1]선서문 중 세부 문구 삭제
- [별표4]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규정 마련 및 연가가산 제한규정 삭제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문구 삭제
- [별표5]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1일의 경조사휴가를 신설하고,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문구 삭제 · 조정 등) 보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전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편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과 복무에 관하여 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근무와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연가, 특별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안 제19조에서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음.
-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5항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였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는 점³⁾에서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장기재직휴가 관련 신·구 규정 비교 〉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신설>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20일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7항에서 기존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면서, 대상자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휴가일수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근무기관에 따른 휴가일수 불균형 해소 및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제천시와 음성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안 제16조제8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취지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조례의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가 확대되어도 지방교육행정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문서처리, 업무연락, 화재 · 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늘어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별표 1]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염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시기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교육감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input type="radio"/>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input type="radio"/> 전화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input type="radio"/>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input type="radio"/>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한다. <input type="radio"/>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input type="radio"/>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input type="radio"/>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input type="radio"/>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시간을 엄수한다. <input type="radio"/> 어려운 동료를 돋는다. <input type="radio"/> 근검 절약한다. <input type="radio"/> 남에게 겸손한다. <input type="radio"/>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input type="radio"/>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input type="radio"/>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input type="radio"/>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input type="radio"/>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관 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박승렬